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49조제2항)

현재는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중 일부 경우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

나. 첫째 육아휴직 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안 제53조제2항)

- 1)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 2)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둘째 자녀부터 각각”을 “대상 자녀별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및 육아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① (생략)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공무상질병휴직,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2. 제1항제3호에 따라 시간선택제 전환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3. 제1항제4호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제5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생략)	제49조(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 ----- -----. <삭 제> <삭 제> <삭 제> 제5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 다. (생략)
라. 육아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해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

② -----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단서 삭제>

<삭제>

<삭제>

휴직을 하는 경우

2. (생략)

③·④ (생략)

⑤ 시간선택제전환경차공무원
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
한다.

1.·2. (생략)

3. 해당 계급에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차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각각 3
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

⑥·⑦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1.·2. (현행과 같음)

3. -----

---- 대상 자녀별로 -----

⑥·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연 락 처	(032) 835 - 2535